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19. 7.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어르신장애인과]

# 제 안 설 명 서

설명자: 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의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되고 기존 6등급의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준 4~6등급)의 2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을 포함한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장애등급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3~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1~6급을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별지서식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으며(제6조, 별표, 별지서식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안 전반)

##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19. 6. 3일부터 6. 24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 2019. 6.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준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 되어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변경 하였으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72001
----------	---------

제출년월일: 2019. 7. 4.  
제출자: 달서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 1. 제안이유

- 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준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 도입
- 나. 기존 6등급의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준 4~6등급)의 2단계로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등급 관련 용어 변경(제6조, 별표, 별지서식 변경)

- 1) 제6조(사업자의 의무)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을 포함한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2) 별표 장애등급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3~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1~6급을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
- 3) 별지서식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 나.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각 조항 용어 변경 등 조문 정비

- 1)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조례안 전반)

##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불임 참조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9. 6. 3. ~24.)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해당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북한이탈주민에”를 “북한이탈주민에게”로, “기여함”을 “이바지 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3조 중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의한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하여”를 “갖춰”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을 포함한다)은 사전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미리”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게을리 하는”을 “게을리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유형	가	나	다	라	마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u>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u>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u>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미과세대상자		
3	<u>등록 장애인으로</u> 미과세대상자	65세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순위결정시 신청유형은 가~마까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유형 “마” 대상은 ① 장애인 ②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④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별지서식]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장애 정도 (장애인경우)		
	생활정도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미과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자				
	설치장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 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

## 신·구조문대비표

"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의  
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  
개월 전에 구 소식지, 인터넷 홈  
페이지 또는 지역 언론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계약을 받은 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을 포함한다)은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설치계약의 해지) 공공시설  
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한다)은 ----- 공공  
시설 -----

## 1. · 2. (현행과 같음)

##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

## 제7조(설치계약의 해지)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생약)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 를 게을리 하는 경우
3. · 4. (생약)

제8조(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 (현행과 같음)
2. -----  
-- 게을리하는 --
3. · 4.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  
-----  
-----  
--- 관계 법령-----  
-----  
-----.  
-----.

# 【 관 계 법령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

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부 칙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